

각국의 안전방재에 관한 법령

– 인도네시아편 –

박 창 복

(위험관리 정보센터과장)

1. 법의 체계

가. 법의 특징

(1) 복잡한 역사적 배경

현재 인도네시아 국민의 90% 정도가 이슬람교도이지만, 과거 종교를 달리하는 많은 왕조가 흥망을 되풀이하여 순수 관습법(말레이지아와 같이 아닷토라 불리움)에는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순수 원시종교 등 많은 종교들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다.

근래 인도네시아의 대부분은 16세기 초부터 금세기 중반까지 400년 이상 네델란드의 식민지였다. 따라서 네델란드의 법률이 그대로 채용된 경우도 있다. 즉, 민법전이나 상법전은 각각 1838년에 제정된 네델란드의 것을 그대로 베낀 것이다.

식민지 시대의 법규, 규칙은 독립 후에도 헌법에 반하지 않는 한, 새로운 법규가 제정되기까지 유효하고, 상기 민법전이나 상법 전은 현재에도 유효하다.

그러나, 영국의 식민지였던 국가와는 달리 네델란드는 식민지 시대에 네델란드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한 것이 아니며, 인종마다 다른 법을 적용하여 인도네시아인 사이에는 식민지 시대에도 아닷토

를 이용했으므로 네델란드법은 다른 국가처럼 식민지로서의 역사를 갖는 인접 국가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영국 법이 끼친 정도의 영향은 주지 않았다.

예를 들면, 상법전의 문언은 네델란드의 옛 상법전과 같으나 현재는 미국의 Restatement와 같이 해설서적인 것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다.

인도네시아 법은 복잡한 역사적 배경으로 ASEAN 중에서도 가장 난해한 법체계로서 자국민에게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한다.

(2) 법의 다중구조

식민지 시대에는 인종에 따라 별개의 법을 적용한다는 정책이 취해진 결과, 서구인에게는 네델란드법, 순수 인도네시아인에게는 아닷토(그 토지의 관습법), 그외 동양인(화교나 인도인)에게는 각각 민족의 관습법이 적용된다는 법의 다중구조가 완성되었다.

이러한 법의 다중구조는 입법이나 관례에 따라 해소되는 방향으로는 가고 있으나(예를 들면, 어음, 수표와 같이 아닷토가 아닌 것에 대하여는 순수 인도네시아인에게도 서구의 법령 또는 규칙이

적용된다), 현재에도 기본적으로는 같은 법률 관계에 대해서 인종 별로 적용되는 법이 다르다는 법의 다중구조는 변하지 않고 있다.

(3) 법률제도는 아직 정비단계이다.

경제 관련 법률을 포함한 법률은 네델란드 식민지 시대의 법률이 그대로 남은 경우가 많아 현재 정비 중에 있으나, 제정법이 없다거나 현대의 경제활동을 규제하는데에도 불충분한 규정 밖에 두지 못한 경우도 있다. 즉, 상법은 1848년의 네델란드 상법 그대로이고,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은 겨우 21조 밖에 없다. 그 외에 지적 소유권의 보호나 토지법, 담보권의 실행 등에 관한 법률제도의 정비도 충분치 않다.

(4) 복잡한 법령·규칙 체계

법률이 대통령령이나 성령 혹은 국장통달에 의해 개폐되는 것이 일상적이다. 꽤 중대한 제도변경도 국장통달 형식이며, 법률의 형을 취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법률만을 체크하여 제도의 틀이 파악되지 않으며, 특정 사항에 관하여 규제 내용을 조사하는 경우는 법률, 대통령령, 성령(省令), 각종 통달(通達) 전부를 체

크하여 어느 법령·규칙의 어느 부분이 유효한가를 정리하지 않으면, 규제의 틀을 알 수 없다.

또한, 법률이나 정령(政令), 통달 등은 과거의 법령이나 다른 관청 소관의 법령과 연속성이나 정합성을 깊이 고려하지 않고 제정되는 경우도 있으며, 법령 상호간에 모순되는 규정도 적지 않다. 그러므로 특정 사항에 관하여 어느 법령이 주로 적용되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복잡한 법령·규칙의 체계가 앞서 기술한 법의 다중구조와 함께 법을 더욱 알기 어렵게 하고 있다.

(5) 법령의 규제 내용이 애매하여 담당관의 재량권이 크다.

법령은 큰 틀이나 정신만을 정한 경우가 많아 해당 법령이 적용되는 범위나 규제 내용의 구체적인 기준을 나타내는 경우가 적다 (top down으로 법령·규칙을 충분히 검토하기 전에 법령이 나오는 것이 많다). 그 결과, 실무에서는 현장 담당관의 해석에 위임되는 부분이 많으며, 담당관의 실질적인 재량권이 크다.

(6) 법령·규칙에 없는 슬로건이 사회적 규범으로서 중요

인도네시아에서는 그 자체는 법령·규칙에 없는 슬로건이 사회적 규범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여, 법령·규칙의 해석이나 정책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하나가 'Pancasila'라 불리는 전국 5원칙으로서 헌법의 전문에 나타나 있다.

* 절대신에게로의 신앙(반드시 이슬람교일 필요는 없다.)

* 인도주의

* 통일

* 민주주의

* 사회 정의의 5개 덕목이다.

'Pancasila의 정신'은 정책 운영의 모든 면에 나타나는 것 중에서도 노사관계에 관해서는 'Pancasila 노사관계'가 정책 운영의 기본이 되어 문제 해결시의 지침이 된다.

Pancasila 외에도 '고돈로온(상호부조)'이나 '무샤와라(의논)'의 정신이라는 슬로건이 잘 사용된다. 고돈로온은 원래 촌락 공동체 내의 상호부조 제도였으나 현재는 '모회사(원청회사)는 고돈로온의 정신을 본받아 자회사(하청회사)를 보살펴 주어야 한다'라는 정책운영시의 지침에 많이 사용된다.

(7) 법령용어는 인도네시아어

법령에 사용되는 언어는 인도네시아어(단, 식민지 시대의 법령에는 현재에도 사용되는 것 중에서 Technical term으로서 네덜란드어가 단어 수준에서 남아 있다)이다.

또한, 공식적으로는 외국어로 번역된 법령집은 발행되지 않는다. 외자유치에 관련된 중요한 정책변경 Package이나 다수의 외국계 자본기업에 큰 영향이 있는 법령개정과 같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공식·비공식을 불문하고 법령의 외국어판이 발행되는 것은 적다.

따라서 법령을 조사함에 인도네시아어를 모르면 사실상 곤란하다.

나. 지방자치체

인도네시아는 1급 자치체인 27개주(provinsi : 자카르타특별시, 존그자카르타특별시, 아체자치주를 포함. 또한, 동치모르주의 귀속에 대해서는 구종주국인 포르투

칼 등 인정되지 않는 나라도 있다)로서 구성되어 있다.

주는 더욱이 2급 자치체인 현(Kabupaten)이나 시(Kotamadya)로 나뉜다.

본 조사에 관련되는 것으로는 1급 자치체는 입지허가, 2급 자치체는 건축허가 및 방해법(네덜란드의 뉴산스법에 해당) 허가를 주는 권한을 갖고 있다.

다. 인도네시아에 진출시 필요한 인·허가사항

(1) 필요한 인·허가

외국 자본의 투자시에는 크게 아래의 4개의 인·허가가 필요하다.

a. 투자허가(투자의 인가 : 대통령 권한)

b. 입지허가(그 장소에 해당 투자를 하는 것의 허가 : 주지사 권한)

c. 건축허가(그 장소에 해당 건축물을 건축하는 허가 : 현, 시장 권한)

d. 방해법 허가(공해안전의 허가로서 방해법은 네덜란드의 뉴산스법에 해당 : 현, 시장의 권한)

한편, 외자를 유치하는 기업에게는 토지소유가 인정되지 않고, 공장 등을 건축하는 경우는 건설권(HGB) 또는 개발권(HGU)이라는 토지권을 취득한다(관할은 국토청 : BPN).

또한,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의 공동개발지구인 바탐섬(바탐공업개발공사가 담당)이나 금융(재무성) 등의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수속창구는 투자조정청(BKPM)이다.

(3) 인·허가에 관련한 그 외의 유의점

외자 유치 정책은 사회·경제 발전에 유익한 것만을 유치한다.

- ① 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이 있다.
- ② 지역·업종 등에 따라 우대
- ③ 제조업의 신규진출은 실질적으로는 공업단지에 한정된다.

2. 방화·방폭에 관한 법령·규칙

가. Building Code(Keputusan Menteri)

건축물에서의 화재 예방 및 대책의 규정에 관한 1985년 1월 2일 공공사업장관 결정 02/KPTS/1985

현행 Building Code는 1948년 정령168호, 1949년 정령40호, 1974년 법률5호, 1982년 법률4호, 1974년 대통령 결정44호, 1983년 대통령 결정45호, 1969년 대통령 지시4호, 1980년 공공사업장관 결정60호, 1984년 공공사업장관 결정211호 등을 통합한 것이다.

담당관청은 공공사업성(Ministry of Public Works)으로 공공사업성이 정한 Guide line인 National Building Code(Keputusan Menteri)를 기초로 주마다 다른 특칙을 작성하고 있다.

다만, 공공사업성에 의하면, 고도로 도시화가 진행된 자카르타특별시의 경우를 제외하면, 국가의 Building Code가 거의 그대로 주의 Building Code로서 채택되고 있다(지진위험이 높은 지역에서 구조에 관한 규칙이 약간 엄격).

또한, 자카르타특별시와 서자바주, 서자바주와 중부자바주와 같이 육상에서 경계를 접하는 주 사이에서는 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에 따라 크게 규제내용이 다르지 않도록 조정하고 있다.

주마다의 특칙으로 유명한 것으로 바리주의 “야자나무보다도 높

은 건축물을 지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있으나 이것은 주지사의 포고에 의한 Guide line이다.

또한, 수도 자카르타특별시에는 독립기념탑(통칭 : MONAS)보다도 높은 건축물을 세워서는 안된다는 규칙이 있으나, 이것은 과정금을 물면 완화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

이 Building Code는 입지환경에서 구조, 설비 그외 건축규제에 관한 넓은 분야를 망라하나 규정은 꽤 단순하여 해석의 폭이 넓다. 공공사업성에서도 이점은 인식하고 있으나, 외국의 규정을 그대로 수입하여 치밀한 체계를 만들기보다도 경험으로 독자적인 체계를 완성시킬 방침이며, 또 자카르타와 같은 극히 일부의 예외를 제외하면 현행의 규정으로 문제가 없다고 여기고 있다.

나. 노동안전에 관련한 제 규칙

1972년 노동장관 결정 158호에서는 노동자 안전의 관점에서 인화성 물질을 사용하는 공장에서의 금연, 나화(안전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불안전한 불꽃)의 사용금지, 소화기 설치, 건축물을 불연재로 건설할 것 등 방화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다.

그 외에 석유정제시설, panha면 공장, 아세틸렌가스를 사용하는 공장, 폭발물을 취급하는 공장, 가스공장, 발전소, 압력용기 사용공장 등에 관해 특별한 노동안전규칙이 있고 방화에 관한 규정이 일부 제정되어 있다.

다. 제 규격

규격은 공업성의 인도네시아공업규격(SII)이나 노동성의 노동성규격(DEPNAKER) 등 다른 기관이 제정하는 28종의 규격이 존재하며, 이들 상호간의 규제 분야

나 내용의 정합성(整合性)도 이전에는 충분치 못했다.

그래서, 관계 장관을 멤버로 하여 국립과학연구소(Indonesian Institute of Science)를 사무국으로 하는 인도네시아 표준화협의회(The Standardization Council of Indonesia)를 중심으로 규격의 통일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1994년 4월부터 인도네시아규격(SNI : Standard Negara Indonesia)에 일원화되었다.

현행 규격은 대부분이 인도네시아 규격에 계승되고 있으나, 일부 정리·통합된 것도 있다. 또한, 현행 규격은 재료나 제품의 사양이나 시험, 검사방법 등 협의의 규격(Standard)을 정한 것과 설비·기계 등을 설치할 때의 실시 기준(Code of Practice)과는 구별되지 않으나 금후는 점차 규격을 개정하여 양자를 구별하도록 할 예정이다.

규격을 새롭게 제정하는 경우, ISO규격이 이미 제정된 것은 원칙적으로 ISO규격을 그대로 채용하지만 그 외는 ASTM, JIS, DIN 등 외국의 규격을 참고로 독자적인 규격을 제정하며, 특정 국가의 규격을 그대로 도입하는 경우는 적다.

공공사업성이 제정한 규정 중에서 화재감지기·소화전·스프링클러 등에 관한 규격이 현재 존재하지만, 이들은 SNI로서 채용된 list에는 게재되어 있지 않고, 근년 새로운 SNI 하에 실시 규준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3. 방화·방폭에 관한 규제

가. 방화·방폭에 관한 법령·규칙 및 요구사항

방화·방폭에 관한 규제는 각 주

의 Building Code에 정해져 있다. 각 주의 Building Code는 공공사업성이 정한 Building Code ‘건축물에서의 화재 예방 및 대책’의 규정에 관한 1985년 1월 2일 공공사업장관 결정 02/KPTS/1985’(보통 Keputusan Menteri 라 칭함)을 기초로 만들어져 있고, 공공사업성에 문의한 내용으로는 자카르타특별시 이외는 Keputusan Menteri와 큰 차이가 없다.

그외, 노동안전 면에서 일부 노동성에 의한 규제가 있다.

나. 구조에 관한 법령·규칙 및 요구사항

내화시간 등에 관한 규제가 Keputusan Menteri에 의해 행해지고 있으나, 거실에 관해서는 방화구획이 제정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다. 피난설비에 관한 법령·규칙 및 요구사항

상기 “나”의 구조에 관한 내용과 같이 기본적으로는 Keputusan Menteri에 규정이 있다.

라. 화재감지·경보장치에 관한 법령·규칙 및 요구사항

“나”와 같이 기본적으로는 Keputusan Menteri에 규정이 있다. 한편, 노동장관 규칙에 따라 노동장소에는 화재감지·경보장치 혹은 자동소화설비의 설치가 필요하다.

마. 소화설비에 관한 법령·규칙 및 요구사항

“나”와 같이 기본적으로는 Keputusan Menteri에 규정이 있다.

4. 방화·방폭 규제의 법령·규칙의 운용실태와 진출시의 유의점

가. 법령·규칙의 운용실태

(1) 실무의 운용실태

① 인·허가 수속 관련

인도네시아에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허가 외에 입지허가, 건축허가, 조업허가 등이 필요하다. 투자허가에 관해서는 BKPM(투자조정청)이 “One Stop Service”의 창구이고, 기본적으로 BKPM이 투자의 가부를 심사하기 때문에 통상 6주 이내에 허가의 가부가 결정되지만, 입지허가나 건축허가, 조업허가 등 주의 권한에 속하는 것은 서류는 일괄하여 BKPM(주 투자조정청)이 접수한다(이곳은 one roof system이라 함). 실제 심사는 관계 관청이 개별로 행하므로 최종 허가에 시간이 걸리며, BKPM에 의하면 6주 정도가 걸린다고 한다.

즉, 호텔의 조업허가에는 레스토랑이나 바의 영업허가, 보일러나 엘리베이터 등 설비면의 허가, 방화·방재면의 허가 등 22종의 허가를 포함하므로 관할 관청도 노동성, 주정부 등 여러 곳이다.

한편, 투자허가는 원칙적으로 24일 이내에 나온다.

② 검사·지도관련

현지에 진출한 건축회사나 진출기업에 의하면, 건축공사 중에 소방서의 담당자가 나오기도 하지만, 준공 후는 거의 검사·지도는 없다고 한다.

(2) 해외 기준·규격의 활용 상황

인도네시아에서는 해외의 특정 국가의 제도를 그대로 복사하지는 않고, 독자의 기준을 제정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 점에서는 방화·방폭도 예외는 아니며, Building Code의 담당 관청인 공공사업성도 그 방침이다.

현재, Building Code에는 방화

구획의 규정이 빠져 있고, 위험물에 대한 특별한 취급을 건축·소방 법규상 요구하지 않는 등 선진국의 기준에 익숙한 사람이 보면, 안전기준으로서 충분한 규정을 두었다고 할 수 없으나, 공공사업성에 의하면 여러 기준으로 실제로 건축물을 지어 보아, 그 경험에서 어떠한 규제가 설정에 맞는가를 판단하여 Building Code를 정비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진국의 기준에 합당한 것이면, 어떤 국가의 기준을 사용하여 설계하여도 인정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외국자본계의 기업이 오피스 건물이나 호텔 등을 건설하는 경우, 인도네시아 기준을 그다지 고려하지 않고 자국의 기준으로 설계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자국의 기준만이 아니고 선진국의 기준 중에서 유리한 기준을 선택·채용하여 건축 단가를 낮추고 있다.

나. 실무상의 유의점

(1) 법령·규칙의 운용은 탄력적이다.

Building Code의 규정 내용은 비교적 간단한 내용에 한정되어 있어 현장에서의 해석 폭이 넓어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하다. 위에서와 같이 일본 기준에 따라 설계되어 있으면, 인도네시아의 Building Code는 거의 의식하지 않고도 문제없이 건축허가를 얻을 수 있다.

(2) 지역 기업의 건축보다도 높은 수준의 안전대책이 기대된다.

Building Code 자체가 현재 정비 단계에 있거나 해석·운용이 탄력적인 것에 더불어 지역 기업에는 외국인의 감각에서는 안전대책 상 약간 의문을 갖는 건물도 특별

히 문제가 되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도 많다.

즉, 지역 자본인 대규모 소매점 체인인 경우, 입주하고 있는 빌딩에 처음부터 붙어있는 외에는 스프링클러는 전혀 없고, 비상구 표시도 판매장이나 방의 어느 위치에서도 볼 수 없다.

(3) Infrastructure의 상황이 우리와는 크게 다르다.

현재 산업 Infrastructure의 내실에 주력하여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외국인의 감각에서 생각할 수 있는 영역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실제 방화체제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① 전력수급이 여의치 않다.

전력수급은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공급부족 상태이고 가끔 전력청(PLN)에서 전력공급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는다. 실제로 PLN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예정으로 착공한 오피스 빌딩이 도중에서 부득이하게 100% 자가발전 방식으로 설계변경이 된 경우도 있다. 자가발전 방식으로 설계변경이 된 경우도 있다.

② 수도의 압력이 불안정.

수도는 기본적으로 네덜란드 절령시대의 것이 사용되고 있으며,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수도의 압력도 불안정하다. 그러므로 화재 발생시에 수도나 공공 소화전에서 직접 소화용의 물을 취하여도 충분한 압력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③ 도시의 규모에 비하여 소방서의 설비가 불충분.

예산상의 제약으로, 옛날보다는 개선되었다지만 소방서의 설비가 불충분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외국 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는 공업단지인 자카르타 교외의 단계란마을의 소방서에 소방차가 들어간 것은 바로 최근이며, 소방차가 없는 시정촌(市町村)도 많다.

실제, 수압이 낮거나 만성적인 교통체증의 영향으로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자연 소화되기까지 진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④ 지역에 따라서는 기계의 유지관리 체제를 검토할 필요.

지역이나 기계의 종류에 따라서는 충분한 유지관리 체제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 기계의 신뢰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일반 산업기계만이 아니라, 방재관련 기기에 대해서도 그러하므로 공장 등의 안전관리 체제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5. 노동안전에 관한 법령규칙

가. 노동안전에 관한 법령규칙

노동안전 관련사항의 소관 관청은 노동성(Ministry of Manpower)이다.

노동성은 노동안전관련 법령을 제정하는 권한을 갖는 외에 노동감독관에 의한 검사·지도도 하고 있다.

(1) 공업법

공업법은 공업시설에 대하여 조업면허를 요구함과 아울러 정부에 의한 공정 및 제품의 안전에 관한 지도·감독을 행하는 취지가 규정되어 있다.

(2) 안전에 관한 1970년 법률1호(1970년 안전법)

1910년 안전법을 대신하여 제정된 노동안전관계의 기본법으로 모든 노동장소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

이 법률 제3조1항에는

① 노동재해의 위험을 줄일 것.

② 화재예방, 화재에 의한 위험의 현상 및 소화

③ 폭발방지

④ 화재 그외의 위험으로부터 피난 수단의 제공

⑤ 부상시의 응급치료

⑥ 노동자에게 보호구 제공

⑦ 온도, 습도, 분진, 흙탕, 연기, 증기, 직사광선, 방사선, 소음, 진동 등의 제어

⑧ 직업병(정신적인 것 포함)의 예방

⑨ 적당한 조명

⑩ 만족할 온도, 습도의 유지

⑪ 청결, 정리, 정돈의 유지

⑫ 노동자에 맞는 환경, 기구, 작업 방법의 제공

⑬ 사람, 동·식물, 상품의 운반수단의 제공 및 안전확보

⑭ 모든 종류의 건축물의 유지·안전확보

⑮ 물품의 저장, 취급, 하역수단의 제공 및 안전확보

⑯ 감전방지

⑰ 사고율이 높아지지 않도록 안전 대책을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이 외에 제5조에서 안전검사관, 안전기술자에 대해서는 제10조에서 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법률이 제정된 1월 12일은 직업안전위생의 날로 지정되어 있고, 매년 1월은 노동안전의 달로서 노동안전에 관한 여러 행사가 있다.

(3) 1930년 증기(蒸氣)규칙

보일러 법규에 해당하는 명령으로 많은 법령 규칙이 새로이 제정된 것 중에서 이 부분만은 네덜란드 통치시대의 것이다.



(4) 방화·소화에 관한 1972년 노동장관 결정 158호

1970년 안전법에서 나온 노동장관 결정의 하나로서 보호구의 지급, 신규 채용 노동자에 대한 노동장소에 존재하는 위험을 충분히 설명할 것. 인화성 물질을 사용하는 공장에서 노출된 화기 사용의 금지나 소화기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규정 내용은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어떤 한 설비·기구가 필요한가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5) 직장 환경 및 소음의 허용범위에 관한 1978년 노동장관 통달 1호

1970년 안전법에서 나온 통달(通達)의 하나로서 실온, 습도, 소음의 허용범위 등에 대해서 정하고 있다.

(6)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위생에 관한 1980년 노동장관 1호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상 일반적인 주의사항(방호망, 안전구의 사용 등)이나 사고의 보고의무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7) 안전을 위한 건강진단에 관한 1980년 노동장관 규칙 2호

최소 연1회의 건강진단을 실시

할 것 및 특수한 조건의 경우는 특별검진이 필요하다는 것 등을 규정.

(8) 가반식 소화기의 설치 및 보수 조건에 관한 1980년 노동장관 규칙 4호

화재 구분, 소화기 종류와 화재 종류의 적합성, 가반식 소화기 설치장소의 표시방법, 가반식 소화기의 정기점검 등에 관한 규칙. 필요한 소화기의 구체적인 크기나 수, 배치 등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9) 압력용기에 관한 1982년 노동장관 규칙 1호

압력용기의 설계, 설치, 수송, 판매, 소유, 보수에 관한 규칙으로 다른 장관 규칙과 비교하면 상세한 규정이 있다.

(10) 자동화재감지·경보장치에 관한 1983년 노동장관 규칙 3호

화재 감지·경보장치의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꽤 상세한 규정이 있다.

상기 외에도 노동성 관할의 법령·규칙(규칙, 결정, 통달 등 여러 형식을 취함)은 아주 많이 나와 있다.

나. 노동안전규칙의 적용 실태와 진출시의 유의점

(1) Pancasila 노동관계

전술한 바와 같이 노동정책은 'Pancasila 노동관계'를 정책 운영의 기본으로 하고 있고, '고돈로운(상호부조)'이나 '무사와라(의논)'의 정신이 내포되어 있어 법령에 따라 확실히 적용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일방적인 주장에도 어느 정도 양보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도 있다.

(2) 검사·지도의 실태

1970년 안전법에 기초하여 노동성의 안전검사관이 사업소의 안전위생 상태에 관하여 검사하고 있다.

노동성에는 안전검사관에 의한 검사제도의 내실을 제5차 5개년 계획의 테마로 하여 제도의 내실에 노력하고 있으나 동서 5천여 km에 걸친 국토를 관장함에는 현재의 인원이 매우 부족하여, 이미 노동환경이 양호한 기업에 대하여 검사를 하는 경우는 드물다.

한편, 사내의 노동안전위생에 관한 위원회를 만들거나 안전캠페인의 실시 등에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3) 진출시의 유의점

노동안전대책은 현재 정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법령 및 그 운용은 그다지 엄격하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런 영향도 있으나, 노동자 측도 노동재해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며, 안전기구나 보호구 등을 사용하지 않는 노동자도 많다고 한다. 따라서 진출에 있어서는 우선 노동자의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

참고 : 본 내용 중의 참고자료 등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는 분은 저희 협회 위험관리 정보센터(783-44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